

의안번호	2209520
의 퇴 인	임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 7. 14.
추계번호	25B187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u>인권침해 구제</u>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포함 사항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포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농어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u>인권보호</u>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외국인·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u>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u>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실태조사 포함 사항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근무환경 및 인권보호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포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함)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1항) 1. 기본계획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함)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요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관리와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배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배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됨(제3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배정심사위원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둠(제4항) 배정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4	안 제10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u>)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정부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 규정의 대상 농어업고용인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	의무규정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3. <u>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신설></u> 4. <u>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신설></u>	재량규정
5	안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0조의3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다만, 송출국가에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독립된 정부기관이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부서를 정하여 배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부서의 장과 협의함(제1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함)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수료는 계절근로자 선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 규정
		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의8 (보증보험 등의 가입)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는 농어업경영체등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10조의11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의 지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지정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재정 소요 없이 개정안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 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 기본계획('25~'29 예정) 수립을 위해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24, 110백만원 소요) · 해양수산부: 제1차 기본계획('25~'29 예정) 수립을 위해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4.7.~'25.4, 250백만원 소요)
2	안 제6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농어업 고용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재정소요 없이 개정안에 따른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임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24 수행, 1,470백만원 소요) · 해양수산부: 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25부터 수행 예정, 예산 400백만원)
4	안 제10조(외국인 농어업 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 고용인력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외국인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안전교육, 고용·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 인권에 관한 실태를 비롯한 농업고용인력 현황 조사를 추진중임 · 현재 지원 내용에 개정안에 따른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의미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7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0조의2(내국인 구인 노력) 신설	×	
6	안 제10조의3(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 신설	×	
7	안 제10조의8(보증보험 등의 가입) 신설	×	
8	안 제10조의11(공공형 계절근로자업장의 지정) 신설	-	-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¹⁾ 중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22년부터 사업장을 지원해 오고 있고, 개정안은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 운영방식: 지자체가 송출국과 MOU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협이 고용한 후 소규모·영세농가가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초단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농작업반 형태로 일일단위 노동력 공급 - 운영현황: '22년 5개소 시범운영, '23년 19개소, '24년 70개소, '25년 90개소로 확대 - 지원조건: 개소당 100백만원×50%(국비 50, 지방비 50) '25 예산: 4,410백만원(국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참고 - 해양수산부도 '25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해남군 1개소, 개소당 1억원)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사업> 지역수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하루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 지원, 국가는 인건비(어가 자부담)를 제외한 관리비를 지원하여 어촌의 일손부족을 완화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25~계속, 국비 5 : 지자체 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농촌고용인력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40-333)의 내역사업

2. 상세 사유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안 제7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이하 “배정심사위원회”라 함)를 두고, 배정심사위원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 현재 법무부가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가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있음

[표 1]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위원장	위원구성	소관 부처	최근 3년('22~'24) 회의 개최 횟수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관계부처 과장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법무부 체류관리과	6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은 배정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며 위원은 법무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와 비교하여 보다 상위의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은 배정심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배정심사위원회 등의 업무 내용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내국인 구인 노력(안 제10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업경영가구, 농업법인 및 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이하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도록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 상담·지원에 대한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지원물량, 단가, 지원방식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업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현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유사한 기관을 운영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의 작성(안 제10조의3 신설)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송출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명부 작성 시 계절근로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검사 및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 인력 필요시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의 경우 적성검사 및 한국어능력 평가 시험이 적용되고 있음

- 개정안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성검사·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 실시 방법, 시험단가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검사 또는 시험의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단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농어업 분야 적성 검사의 구성 내용 및 실시 비용 등을 산출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연구용역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보증보험 등의 가입(안 제10조의8 신설)

-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등이 임금채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국가는 농어업경영체등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여행자보험(의무) 및 건강보험(6개월 이상 체류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표 2] 임금채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개요

구분	임금채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내용	채불 임금(최대 400만원)	상해치료비, 후유장해 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등
보험 기간	4년 10개월(일시납)	최대 3년(일시납)	1년 만기(일시납)

구분	임금채불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66,300원 / (4년10개월)	17,900원 / (25세, 3년 기준)	181,900원 / 연간
보험료 지원	-	-	국고 50% 지원, 지방비 추가 지원 * 피보험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우
운영사	서울보증보험	삼성화재	NH농협생명
운영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 농어업경영체 수, 보증보험 및 상해보험 보험료 지원 비율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보증보험, 상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과 국가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법무부 지침(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분야	산업전반 * 중소제조업, 농·축산업, 음식점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농어업분야
소관 (운영)	고용부(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지자체)
체류자격 /체류기간	E-9/3년 (사업주 요청 시 1년 10개월 추가) * 1회, 동일 사업장 근무를 조건으로 재입국 시 4년 10개월 추가 근무 가능(총 9년 8개월)	E-8(계절근로)/5개월 * 3개월 연장 가능(총 8개월)
농식품부 역할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쿼터 배분 협의, 제도 개선 요청, 기타 농업 분야 의견 수렴 및 건의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요청 및 기타 농업분야 의견수렴 및 건의
해수부 역할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쿼터 배분 협의, 제도 개선 요청, 기타 어업분야 의견 수렴 및 건의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요청 및 어업분야 의견 수렴 및 건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